

◆ 政府 施策 ◆

# 關稅減免대상 대폭 축소

## — 재무부, 감면규칙 早期개정 시행 —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분야의 기계류·시설재 수입에 대한 關稅減免 대상품목이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가 설비투자를 위해 시설재를 들여올 경우 관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財務部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에 대한 관세감면규칙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이를 早期개정해 11월 1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재무부의 이번 감면규칙개정은 첨단 기술산업·방위산업분야의 시설재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대폭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첨단산업분야의 감면대상품목은 528개로 돼 있으나 앞으로 286개로 무려 242개가 줄어든다.

또 방위산업분야의 시설제도 관세감면대상이 87개에서 54개로 축소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관세감면이 적용되고 있는 615개 품목중 국산화가 이뤄진 진공챔버·원심건조기, 5년이상 장기적으로 관세를 감면해온 웨이퍼스크러버링머신·자동로더장치등 347개 품목이 더 이상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고 라이터·인쇄회로기판 기능시험기 등 84개 품목은 감면대상 규격이 바뀌었다. 재무부는 “관세감면 축소 원칙에 입각해 국산화가 이뤄진 품목과 장기간 감면혜택을 주었던 품목을 제외하는 대신 산업연관 효과가 큰 첨단산업과 첨단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에는 새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감면대상품목중에서 앞으로도 계속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품목은 184개 품목뿐이다.

그러나 업계의 관세감면 요청을 감안, 다중화장치·금형·평판도교정기·자동분취기를 비롯 72개 기계류·시설재를 관세감면대상으로 새로 지정키로 했다. 또 첨단기술산업 관세감면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업종에 △외곽일정 H빔제조업 △스테인리스·특수합금계 극박판제조업등 2개 업종을 추가해 153개 업종으로 늘렸다.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액은 지난 91년 연간 6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9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관세감면율을 금년 35%에서 내년 30%, 96년 25%, 97년 20%로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어서 앞으로 업계의 수혜폭은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 관세감면 신규 대상품목(전기관련 품목)
- 정밀전자산업 : • 소성로(8514.10) • 가소로(8515.30) • 단락기(저전압·고전류용 스위치 8536.50)
  - 전자제어 및 고도정밀 기계산업 : • 브레이징로(8514.10)
  - 신소재 산업 : • RUM모타(8501.53) • 광휘소둔로(압연제품 고풍택유지로 8514.20)
    - 진공아크재 용해로(8514.20)
  - 항공기산업 : • 진공로(8514.10)
  - 방위산업 : • 엘리베이터(8428.33)

## '94 공업발전기금 운용관리 요령 개정

### - 기금사용자 반기별 사업진도 보고 -

상공자원부는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1994년도 공업발전기금 운용, 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상공자원부 공고 제1994-110호, '94. 11. 2)했다.

### '94 공업발전기금 운용, 관리요령 개정

#### I. 부문별 지원규모

(단위 : 억원)

지 원 부 문	지 원 규 모
1. 신제품 개발	1,065
• 기계	550
• 전자	225
• 전기	65
• 소재	145
- 일반소재	80
- 섬유소재	65
• 제품 디자인	80
2. 첨단산업 기술개발	520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70)
3. 합리화 사업	910
• 신발	600
• 직물	70
• 편직, 봉제, 염색	220
• 패션디자인	20
4. 염색공단폐수처리시설확충	150
계	2,645

※ 시제품개발부문의 업종별, 분야별 지원규모는 향후 기금지원상황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II. 1. 가. 용자대상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용자대상 : 다음 각호의 시제품·소재·신기술·제품디자인·자원절약기술 및 환경오염방지 등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다만,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 제3조에의거 선정된 계열기업군 및 대상기업체(이하 “계열기업군 및 대상기업체”라 한다)는 제외] 용자대상 제9호를 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특허법 제87조 및 실용신안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기술을 최초로 사업화하고자 하는 업체의 개발사업

II.1. 중 나. 우선지원대상(제1호 내지 제11호)을 삭제하고, II. 1.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공동개발사업 인정범위 : 2개이상의 업체가 민간생산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II. 2. 가. 용자대상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용자대상 : 다음 각호의 첨단산업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

용자대상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공자원부고시 제94-36호에 정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생산기술개발사업

II. 2. 중 나. 우선지원대상(제1호 내지 제7호)을 삭제하고 “다. 라. 마. 바”를 “나. 라. 다. 마”로 하며, 나. 공동개발사업 인정범위와 마. 취급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다. 계속추진사업”을 “다. 계속사업”으로 한다.

나. 공동개발사업범위 : 참여율 2순위 업체가 1순위 업체 사업비의 50%이상을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1개이상 업체는 동일 계열기업군 및 대상기업체가 아니어야 한다.

마. 취급기관 : 생산기술연구원(단,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정보처리산업진흥회)

II.3. 가. 용자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용자대상

1) 신발 : 신발산업합리화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자금지원대상

2) 직물, 편직·봉제·염색 : 해당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후시설개체, 시설자동화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다만, 계열기업군 및 대상기업체는 제외함)

3) 패션디자인 : 패션디자인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하여 패션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전문기관과 자기상표 개발 및 패션디자인 개발을 추진하는 패션관련업체

### Ⅲ. 융자조건

#### 1. 시제품개발 및 첨단산업기술개발사업

융자금리	융자기간	동일인당한도액	융자비율	자금의 지원범위
연 6.5%	5년이내(2년 거치 3년분 할)	-시제품 : 5억원이 내(공동개발사업 : 8억원이내) -첨단 : 10억원이내 (공동개발사업, 계 속사업 : 제한없 음)	운전및 시설소요 자 금의 각 70%이내 (다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용 기구, 기 자재 및 시험생산 시 설등 시설자금에 한 해서는 100%이내)	1) 기술개발을 위한 자체 연구 및 위탁연구 -연구인력인건비 -건본비 및 재료비 -시험검사비 -연구인력교육연수비 -기술지도비 -위탁연구개발비 2) 연구개발용 기구, 기자재 구 입비 3) 기술도입비 4) 외국기술인증획득비 5) 시험생산시설의 건설및 운 전비 6) 기술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 로 소요되는 기타 경산비

#### 2. 합리화 사업 및 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 (생략)

### Ⅳ. 신청, 선정 및 의무사항

#### 1. 지원신청

가. 신청기한 : 취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신청, 접수기관 : 위 “II부분별 융자대상 및 취급기관”의 각 취급기관

다. 융자취급은행

- 1) 시제품, 첨단산업기술개발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 2) 합리화 및 염색공단폐수처리시설확충사업 : (생략)

라. 신청서류

-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취급기관 소정양식)2부
- 2) 기타 참고자료

#### 2. 사업자 선정 및 우대조치

가. 취급기관의 장은 융자대상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부문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기술개발능력, 사업화가능성, 개발과제의 중요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취급기관의 장은 전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내용을 기금운용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별 지원규모 범위내에서 사업자 또는 예비사업자를 선정된 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기금을 용자받을 수 있는 자로 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기술개발부문 취급기관의 장은 용자대상 사업자중에서 R&D 투자비율이 높은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부설연구기관)가 설치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조치 하여야 한다.

### 3. 신청자 의무사항

#### 가. 대출완료기한

기금을 용자지원 받기로 확정된 자(이하 “용자사업자”라 한다)는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취급기관의 장의 기한연장 조치가 없는 한 확정 통보후 8개월(시설 자금은 12개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 나. 수수료 납부

용자사업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취급기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다. 목적외 사용금지

기금을 용자받은자(이하 “기금사용자”라 한다)는 그 용자받은 자금을 용자받은 때에 지정된 용도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 라. 구분계리

기금사용자는 해당 자금을 타자금과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 마. 보고의무

기금사용자는 매 반기별로 그 말일 현재의 사업진도의 내역을 작성하여 이를 다음달 말일까지 취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취급기관 및 용자취급은행의 장 의무사항 : (생략)

# '95 특정연구개발사업 계획 공고

## - 연구개발 관련기관 신청 접수 -

과학기술처는 '95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할 연구사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과학기술처 공고 제1994-63호, 1994. 11. 3)하고 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 1. 지원사업 및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사 업 내 용	접 수 기 관
선도기술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단계('95~'97) 제1차년도 사업</li> <li>[과학기술처 주관]</li> <li>- 신의약·신농약, 신기능생물소재, 정보·전자 에너지 첨단소재,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li> <li>[상공자원부 주관]</li> <li>차세대 자동차, 첨단생산시스템, 신에너지 기술,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li> <li>[체신부 주관]</li> <li>-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기술개발</li> <li>[환경처 주관]</li> <li>- 환경공학기술개발</li> </ul>	'95.4.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세부내용별도 공고예정
국제공동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기술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미래 첨단기술분야로서</li> <li>- 외국의 연구기관, 대학, 기업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5~6.</li> <li>• '95년상반기에 세부내용 별도 공고예정</li> </ul>
연구기획평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업</li> <li>○ 산·학·연 협동연구회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1.~11.</li> <li>• '95.6.~7.</li> </ul>
국책연구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공학기술개발</li> <li>- 계놈분석 및 이용, 생체기능연구등 10개 전략분야</li> <li>○ 우주·항공기술개발</li> <li>- 다목적 실용위성, 과학로켓, 풍동개발등</li> <li>○ 공공기술개발사업</li> <li>- 미래원천, 해양, CFC대체물질, 가스터빈, 의과학, 고속전철, GIS, 전통기술개발등</li> <li>○ 핵심소프트웨어 기술개발</li> <li>- STEP 2000, 고속병렬 컴퓨터, 멀티미디어, 대형컴퓨터등</li> <li>○ 엔지니어링 핵심공통기반기술개발</li> <li>- 플랜트기본설계, 컴퓨터 통합설계기술등</li> <li>○ 핵심산업기술개발</li> <li>- 제품혁신, 소재혁신 및 공정혁신기술개발</li> <li>○ 연구성과 확산사업</li> <li>- 기술무상양허사업, 기술혁신지원사업, 중소기업 창원지원, 기술개발 상담센터등</li> </ul>	• '95년상반기에 세부내용 별도 공고예정
출연기관연구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기관의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기술개발사업</li> <li>- 출연(연)특성화 계획에 따른 주기능중심으로 지원</li> </ul>	• '95.2~3

## 2. 기타 참고사항

### ○ 신청자격(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 대상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및 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 법인인 연구기관
- 기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선도기술개발사업중 타부처 사업은 해당부처의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하며 출연기관 연구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처 산하 연구기관에 한함.

### ○ 접수처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연구기획관리단 ☎ 968-4292, 2895)

### ○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산·학·연 협동연구과제를 우선 지원함.

### ○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융자지원할 예정임.

## 工場新・増設 가능여부 쉽게 확인

### - 商工部, 공장입지기준 고시 개정 -

상공자원부는 민원인들이 특정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토지이용 관련법령으로 개별적으로 규제받는 용도지역별 공장 신·증설 허용범위를 종합한 공장입지 기준고시(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139호, 94. 11.3)중 일부를 개정 고시 했다.

상공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개정은 지금까지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각 개별법령마다 별도로 규정되어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해당지역의 관련법령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던 것을 해소키 위한 것이다.

상공부는 공장입지기준고시의 개정을 통해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종합, 고시함으로써 앞으로 공장설립에 관한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 창업투자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공부는 이번 고시개정에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키 위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기준공장면적률도 60%로 정했다.

## 에너지節約 技術개발사업 대상課題 選定

### - 商工部, 95년도 에너지절약기술개발 실행계획 발표 -

상공자원부는 내년도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 추진대상과제로 연소제어용 산소부화농축시스템 등 38개 신규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정부는 38개 신규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희망업체의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전문관리기관의 평가를 거친 후 50%에서 최고 100%까지의 기술개발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이를 위해 내년중 에너지 자원특별회계 169억원, 한전 R&D자금 50억원, 가스공사 R&D 자금 5억원 등 총 224억원의 지원예산을 확보, 214억원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10억원은 융자 지원키로 했다.

상공자원부가 발표한 95년도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실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술수요조사 결과 선정된 38개 신규과제는 정부주도 및 중형화과제가 5개 분야 15개 과제이며 기업주도의 단위과제로는 23개 과제가 선정됐다.

정부는 이같은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92년부터 실시돼 온 기술수요 조사 결과와 그간 추진해 온 기업주도 및 정부주도 연구사업등의 과제를 종합하여 내년중 에너지절약기술분야의 기술체계도를 작성,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확산 및 보급으로 실질적인 에너지절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정연구사업, 시범적용사업 등 실용화보급사업과 기술개발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시범 설치자에 대해서는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 설치비용의 5%를 용자지원, 에너지절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상용화 및 보급단계에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생산설비 설치자 및 설비수요자에 설비자금의 10%를 용자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내년에는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오염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기술개발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97년부터 2007년까지의 장기적인 국가에너지 기술개발정책 목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 추가 지원

재무부는 국산기계 구매를 통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고자 다음과 같이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증액지원키로 하였는바, 관련 업체의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규모 : 2,000억원
- 지원조건 : Libor + 2.0%, 8년이내
- 취급금융기관 : 전은행